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을 사업주체가 취득하여 재공급하는 주택(이하 “계약취소주택”이라 한다)입니다. 청약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등 세부사항은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자격 등을 위반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처리 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3.07.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10.31.이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10.22.입니다.(이하 청약자격조건외의 기간, 나이, 거주지역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은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 공급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은 제54조에 따라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습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간

-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청약동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한 주택입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되면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 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봅니다.
-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0.31.)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하남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한 세대주(일반공급) 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을 충족한 무주택 세대구성원(특별공급)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 단, 외국인인 청약신청 불가하며,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한 세대주인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하남시)에 거주하는 자에게 공급하므로 제23조제2항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본 아파트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본 아파트 무순위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청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본 아파트는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취소후 재공급	○	○	X	X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5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본 공고의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까지 (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입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부동산 거래의 신고 의무화

- 본 아파트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고 추후 등기 시 소인 처리)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당첨시 1회 제한 및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

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전매행위 제한 등 관련사항 안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의3에 따라 지자체 등으로부터 재공급공고 승인을 받는 취소후 재공급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시점이 아닌, 재공급 승인시점 현재 기준의 법령에 따라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본 아파트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주택법」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제73조 규정에 의거 최초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3년까지 전매 행위가 제한되며 3년 이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는 경우 3년 경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제출	계약체결
일 정	11월 06일(월)	11월 07일(화)	11월 10일(금)	11월 14일(화) 10:00~16:00	11월 17일(금) 10:00~16:00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제출서류 지참하여 당사 분양사무소 방문	계약서류 지참하여 당사 분양사무소 방문
장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당사 분양사무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401, 대륭테크노타운15차 1107호 대우건설 수도권남부마케팅권역사무실	

※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하므로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발급 등 사전에 준비하시어 청약신청 당일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창구, 분양사무소 접수 불가)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07.31.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하남시 주택과 - 40648호(2023.10.27.)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하남시 감일중앙로 80,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 아파트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지상 29층, 5개동, 총 496세대 중 계약최소주택 3세대 [일반공급 1세대, 특별공급 2세대(신혼부부 특별공급 2세대)]

■ 입주시기 : 금회 공급분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18일 전까지 잔금 납입 완료 후 입주 가능(최초 입주 개시 2023년 06월 30일)

■ 공급대상

(단위: m²,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신혼부부	계	
민영 주택	2023930041	01	084.8934A	84A	84.8934	25.0237	109.9171	48.9193	158.8364	27.3000	1	-	-	1
		02	084.8937B	84B	84.8937	24.8306	109.7243	48.9195	158.6438	27.3001	2	2	2	-
		합계									3	2	2	1

※ 평형 환산방법: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형 표기방식을 주거전용면적으로 표기하였으니, 이점 유의하시어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면적합산 시 소수점 5자리에서 단수조정으로 계산한 값이 적용되어 소수점 4자리로 산정하였으며,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의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이전 등기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원)

주택형 (전용면적)	타입 (약식표기)	동-호수	공급금액			계약금 (20%)	잔금 (80%)
			대지비	건축비	소계(A)	계약시	2023.12.18.
084.8934A	84A	102-2104	389,512,340	181,787,660	571,300,000	114,260,000	457,040,000
084.8937B	84B	103-1103	378,330,820	176,569,180	554,900,000	110,980,000	443,920,000
084.8937B	84B	105-2102	388,830,540	181,469,460	570,300,000	114,060,000	456,240,000

※ 분양대금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실입주일(키블출일 또는 입주증 발급일 중 빠른 날)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다음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분양대금 중 선납한 금액은 별도의 이자나 할인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설치비용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등) 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옵션은 기존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입니다.(승계거부시 계약불가)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 아파트 관리비의 경우 잔금약정일 다음날로부터 잔금납부와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단, 잔금약정일 이전 입주하는 경우 열쇠수령일로부터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계약

※ 2023.06.29. 사용검사 완료에 따라 금회 공급주택에 대한 마이너스 옵션계약은 선택 불가합니다.

■ 발코니확장 및 플러스옵션 금액

※ 발코니 확장 및 별도품목(유상), 가전옵션(유상)은 아파트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본 주택은 동-호수별로 기재한 바와 같이 발코니 확장 및 별도품목(유상), 가전옵션(유상)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해당 동호수에 선택되어 공사한 발코니 확장 및 별도품목(유상), 가전옵션(유상)의 변경, 추가 및 취소 등이 불가합니다. 정확히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옵션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개이며, 공동주택 계약일에 계약을 진행합니다.

※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옵션 계약의 공급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① 발코니확장 및 별도품목

(단위: 원)

타입	동-호수	발코니확장	현관패키지	주방패키지	침실패키지	거실패키지	거실/주방 바닥타일	합 계
84A	102-2104	5,623,000	-	-	-	-	-	5,623,000
84B	103-1103	6,333,100	-	-	-	-	-	6,333,100
84B	105-2102	6,333,100	-	-	-	-	-	6,333,100

※ 별도 품목 미설치에 따른 세부 내용은 홈페이지 내 평면정보(https://www.prugio.com/house/2020/hanam/apt/index_w.aspx)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용은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용은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계약자가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용에는 외부창호(비확장 발코니 외부창호 포함), 확장형 주방가구 설치비용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면적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출되는 면적으로 실사용면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계약 전 이점 양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주동 조합의 형태에 따른 인접 세대 간의 벽체 및 단열재의 위치가 상이하며, 이로 인하여 동일 유형세대에도 발코니의 유효면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관련법상 내실발코니가 실외기실 및 하향식피난구로 설치될 수 있고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주택형별로 마감적용부위가 다를 수 있으며,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실내 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배선기구/조명기구/스마트스위치/분전함 등의 위치 및 수량, 사양 등은 변경될 수 있고, 일부는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안방을 제외한 거실, 침실 등의 발코니 조명기구는 삭제됩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외관구성상 일부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선홍통 배수관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일부 돌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에는 환기시스템 장비가 설치되며 덕트, 스프링클러 배관 등이 노출되거나 가동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등기구 위치 변경 및 천장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확장형 세대의 경우 일부 발코니가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단열재 추가설치로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생기는 침실(거실)부분에 가구 배치로 인하여 창문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가구 배치 시 창문과 이격 또는 난간높이 확보를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시공하지 않을 경우, 행정관청에 별도의 행위허가 후 시공하여야 합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홍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세대는 비확장 발코니에 선홍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됩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 시 비확장으로 남아 있는 발코니1 창호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

(결로, 결빙, 곰팡이 등의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대상에서 제외됨)

※ 현관 패키지 미선택에 따라 중문틀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 거실 패키지 미선택에 따라 아트월은 시공되지 않습니다.(벽지 시공)

※ 거실/주방 바닥타일 미선택시에도 욕실1(건식욕실)+발코니2(건식세탁실)는 바닥타일로 시공됨(600*600)

② 가전옵션

(단위: 원)

타입	동-호수	시스템에어컨				전기오븐		양문형냉장고		빌트인 김치냉장고 / 콤비냉장고		합 계
		일반형		공기청정형		일반형	고급형	일반형	고급형	김치냉장고	콤비냉장고	
		3대	5대	3대	5대							
84A	102-2104	-	-	-	-	-	-	-	-	-	-	-
84B	103-1103	-	-	-	-	-	-	-	-	-	-	-
84B	105-2102	-	-	-	-	-	-	-	-	-	-	-
타입	동-호수	하이브리드쿡탑 / 전기쿡탑				식기세척기		의류관리기		드레스룸 제습기	빌트인 신발장 청소기	합 계
		하이라이트2 가스1	인덕션2 가스1	인덕션2 하이라이트1	인덕션3구	일반형	고급형	화이트	블랙			
84A	102-2104	-	-	-	-	-	-	-	-	-	-	-
84B	103-1103	-	-	-	-	-	-	-	-	-	-	-
84B	105-2102	-	-	-	-	-	-	-	-	-	-	-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미선택으로 인해 매립형 냉매배관 4개소(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만 시공되며, 추후 입주자가 별도로 설치하는 에어컨의 제조사별 사양에 따라 실외기가 1~3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미선택으로 인해 실외기 실내 고용량 스위치와 침실1, 침실2, 침실3에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콘센트가 설치됩니다.

※ 하이브리드쿡탑, 전기쿡탑 미선택으로 인해 3구형 가스쿡탑이 설치됩니다.

③ 납부금액

(단위: 원)

타입	동-호수	발코니확장 및 별도품목 ①	가전옵션 ②	합 계 ③=(①+②)	계약금(정액제)	잔금	비고
					계약시	2023.12.18.	
84A	102-2104	5,623,000	-	5,623,000	3,000,000	2,623,000	
84B	103-1103	6,333,100	-	6,333,100	3,000,000	3,333,100	
84B	105-2102	6,333,100	-	6,333,100	3,000,000	3,333,100	

■ 공통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2023년 06월 입주하였으며, 금회 재공급 세대의 잔금납부일은 2023년 12월 18일까지 입니다.(계약금과 달리 잔금은 세대별 가상계좌(계약자에게 별도 안내)로 납부해야 함)

※ 청약 전 현장방문 등으로 주변여건을 직접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에 임하여,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계약 전 세대 내부 관람은 불가합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모든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색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청약자 자격검증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합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로서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제한]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혼부부 특별공급 : 2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하남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청약 가능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 이하인 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3.10.31.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3년 적용)**

신혼부부 특별공급	구분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3년 적용)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이하	~9,113,233원	~10,670,878원	~11,256,689원	~12,182,295원	~13,107,900원	~14,033,506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이하	~10,415,123원	~12,195,290원	~12,864,787원	~13,922,622원	~14,980,458원	~16,038,293원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하남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세대주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1~2)에 해당하는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은 자(외국인은 청약신청 불가)
 1. 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기간 (공급질서교란자 또는 전매제한 위반자. 청약신청자 본인에 한함.)
 2. 제58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부적격당첨자. 청약신청자 본인에 한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별도 순위 없음)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 및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신혼부부	2023.11.06(월) 09: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일반공급		2023.11.07(화) 09:00~17:30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 청약신청일 09:00~17:30)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취소후재공급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취소후재공급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 ①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 상황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APT 취소후재공급 청약신청」⇒「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단,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 중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해당 주택형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해당 주택형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구 분	선 정 방 법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확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신혼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3.11.10.(금) • 확인방법: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3.11.17.(금) (10:00~16:00) • 장소: 당사 분양사무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401, 대륭테크노타운15차 1107호 대우건설 수도권남부마케팅권역 사무실)
일반공급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 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청약홈(www.applyhome.co.kr)을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쏠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3.11.10(금) ~ 2023.11.19(일)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3.11.10(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및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 시 구비서류

구분	제출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동서류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무주택서약서	-	- 분양사무소 비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발급용에 한함(용도: 아파트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 대리 계약 불가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상기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사항 참고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소득증빙 서류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성년자인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의 소득입증 서류("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고하여 발급)
		○	기본증명서	자녀	• 출생 관련 일자 확인 필요 시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구분	제출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또는 배우자)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부동산 소유현황	세대 전원	•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자산기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대리인 제출시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청약자	- 본인 발급용에 한함(용도: 당첨자격확인 위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불가
	○		위임장	청약자	- 견본주택 비치(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사전 서류 접수기간 내 제출]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자료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금년도 월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또는 총 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및 월별 급여 명세표(직인날인))	①, 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의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 산정	①, ② 해당직장
	직장 가입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명세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의 해당	①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사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또는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종합소득세 미신고자)	①, ② 세무서
	금년도 개업한 사업자 등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징수원부로 발급신청) 또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국민연금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공고일 이전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 확인하여 월평균소득 산정	① 세무서 ② 국민연금공단/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① 세무서 ② 국민연금공단/세무서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자료	발급처
법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법인 재무제표	① 세무서/등기소 ② 세무서/국세청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원본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직인날인)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①,② 해당직장/세무서 ②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① 행정복지센터
비정규직, 일용근로 소득자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근로소득세, 월별급여명세표 및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① 해당직장 ② 국민연금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 견본주택에 비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① 접수장소(견본주택)

※ 상기 모든 제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0.31.)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번호(뒷자리 포함) 등을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세대의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 권원의 합산 월평균 소득을 입증하여야 하며,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이라도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 중에 휴직했던 분은 휴직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모든 제 증명 서류는 원본을(사업자의 직인날인이 필수) 제출해야 하며, 사본 및 FAX 수신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시 구비서류

구분	제출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입금증	본인	- 분양사무소에서는 수납 불가.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이체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아파트 계약용” 본인발급용에 한함. (단, 대리인 계약 시 불가)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	자격확인서류 일체	본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추가 개별통지서류	-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대리인 계약 시 (본인 외 제3자)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본인	- 용도: “아파트 계약위임용” 본인발급용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계약 불가)
	○		위임장	본인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0.31.)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 시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구비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 공급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아파트 계좌와 발코니확장 및 플러스옵션 계좌가 상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대금 납부계좌

구분	계좌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아파트	계약금	농협은행	301-0274-2973-11	엔에이치투자증권(주)
아파트	잔금	계약 체결 시 세대별로 가상계좌 부여		

■ 발코니확장 및 플러스옵션 대금 납부계좌

구분	계좌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발코니확장 및 플러스옵션	계약금	농협은행	301-0277-1628-61	엔에이치투자증권(주)
발코니확장 및 플러스옵션	잔금	계약 체결 시 세대별로 가상계좌 부여		

※ 공급대금 중 계약금은 상기 대금별 납부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분양사무소에서는 현금수납이 불가하며(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가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101동101호 홍길동 → 1010101홍길동)
(단,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아파트 공급대금, 발코니확장 및 플러스옵션 대금은 지정된 각각의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은 세대별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아파트 대금 모계좌[농협은행 301-0274-2973-11], 발코니확장 및 플러스옵션 모계좌[농협은행 301-0277-1628-61]로 관리되며, 계약 체결 시 세대별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 상기 분양대금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지정된 분양대금(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 바라며, 납부기일 내 미납 시 공급계약서에 따른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분양대금 대출 알선은 없으며, 모든 분양대금은 자납하여야 합니다.

■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미계약분 공급방법

■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미계약분이나 부적격자 발생 시 미계약 발생 주택형의 예비당첨자에게만 유선 및 문자로 통보예정입니다.

■ 예비당첨자 서류검수를 통보 받은 경우 예비 당첨자 검수일(별도 통보)에 서류 제출하여 검수 받아야 하며 서류 검수를 받지 않는 경우 예비당첨자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유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나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예비당첨자는 500% 선발하므로 서류검수 요청은 미달된 주택형의 예비당첨자 선순위 일부에게 통보하며, 선순위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서류검수 및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납부 안내

■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부동산 분양계약서, 발코니확장 및 플러스옵션계약, 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계약자는 최초 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서에 기재된 실제 거래가격으로 「인지세법」제8조제1항에 따라 등기원인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수입인지 구입 후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분양대금 미납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차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정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VI

기타 유의 사항

■ **청약하시기 전에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여러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작은 도서관, 독서실, 피트니스클럽 등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건축 감리	전기 감리	소방 및 정보통신 감리
회사명	(주)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주)세광티이씨	(주)갑인엔지니어링
감리금액	2,355,529,000	619,868,947	583,000,000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의무사항 적용여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필요 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수도법 15조,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설비사용(세탁용 및 청소용 제외)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 각 실별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조명설치 설치(다목)	적용	세대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조명기구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효율 조명기구 또는 LED 조명기구를 사용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는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운용규정」에 의하여 대기전력 저감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을 거실, 침실, 주방에 각 1개씩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의 화장실 내에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공동주택 성능등급의 표시

녹색건축 인증서

[건축물 개요]

건축물명	경일 푸르지오 마크뷰
건축주	㈜대우건설
문명(제정일)	2023년 7월 31일
주소	경기도 하남시 길이동 438
층 수	지하 3층, 지상 29층 / 496세대
면적	126,351.02㎡(지상/지하: 126,351.02/0㎡)
건축물의 구분 용도	공동주택(아파트), 판매시설, 유통시설
설계자	㈜에코원건축사사무소
공사시공자	㈜대우건설
공사감독자	㈜합침비밀건축사사무소

[인증 개요]

인증번호	G-SEED-C-2023-0901-7
인증기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유효기간	2023.09.26 ~ 2026.09.25

[인증 등급]

인증등급	일반등급(녹색건축인증등급: A급)
인증기준	녹색건축 인증기준
유효기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764호
합격부 고시	제2019-248호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을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일반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분야별 평가]

분야	평가
토지이용 및 교통	25%
에너지 및 환경오염	57%
재료 및 자원	71%
물순환관리	34%
유지관리	80%
생태환경	14%
실내환경	62%

2023년 9월 26일

kpc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KOREA PRODUCTIVITY CENTER QUALITY ASSURANCE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시) <개정 2016. 7. 27.>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 공동주택명: 하남길지구 주상복합용지 신축공사
- 신 청 자: ㈜대우건설
- 대 외 위 치: 경기도 하남시 길이동지구 내 주상복합용지(주상1)
- 성 능 등 급

가. 소용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광양충적용 차단성능	★★★★
2. 중앙충적용 차단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공용소음(도로, 창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상성 급내수 소음	★★★★

나. 구조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기밀성	★★
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3.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준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해당없음
2. 과도한 지체개발 지양	해당없음
3. 토양수 질성도양 최소화	해당없음
4. 일조권 감소방지 대책의 타당성	해당없음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7. 신·재생에너지 적용	해당없음
8. 자립수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해당없음
10. 환경성상안 제품(EPO)의 사용	★★
11. 지반수 자재의 사용	★★
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해당없음
1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16. 빗물관리	★★
17.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18. 열수확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차내·외 보행자 친화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함성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해당없음
5. 생활환경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동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위급대응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 휴대전화의 중첩시스템	★★★★
14. 방화안전 훈련초	★★

마. 화재·소방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피난설비	★★
3. 내화성능	★★
4. 수평피난거리	★★
5. 복도 및 계단 유도설비	★★★★
6. 피난설비	★★

「녹색건축을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0년 08월 10일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장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 4호 서시) <개정 2017.1.2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건축물 개요

건축물명	경일 푸르지오 마크뷰(주거용)
준공연도	20230929
주소	경기도 하남시 길이동 438
층 수	지하 3층 지상 29층(496세대)
면적	126,351.02㎡(지상/지하)
건축물의 구분 용도	주상복합
설계자	(주)에코원건축사사무소
공사시공자	(주)대우건설
공사감독자	(주)합침비밀건축사사무소

인증 개요

인증번호	23-주-본-1-0177
평가자	주원준
인증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인증일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유효기간	2023-09-26 까지

인증등급: 1등급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에너지효율등급

단위면적당 CO2 배출량 (kg/㎡·년)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1차 에너지소비량) (kWh/㎡·년)	등급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비량 (kWh/㎡·년)	단위면적당 CO2 배출량 (kg/㎡·년)	비고
냉방	0.0	0.0	0.0	0.0	0.0	
난방	23.8	28.1	20.4	4.6	4.6	
공명	30.7	42.4	40.1	0.4	0.4	
조명	10.4	10.4	28.7	4.9	4.9	
합계	74.9	84.3	9.3	1.6	1.6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또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비량: 에너지소비량의 연료의 연화, 가열, 분할,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2 배출량: 에너지 소비량에서 산출된 단위면적당 이상온실가스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난방설비)가 없음(0)이므로 난방설비(난방설비)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비량에 냉방설비(난방설비)를 포함하여 산출합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을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3년 09월 05일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장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사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 아파트 분양총액의 범위 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 분양가격은 상한금액 미만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구 분		적용총액	구 분		적용총액	구 분		적용총액								
택지비 (4)	택지공급가격	107,984,640,000	공사비	건축 (23)	철근콘크리트 공사	23,020,955,603	기계설비 (9)	오수-배수설비공사	743,956,611							
	기간이자	4,205,850,829			용접공사	0		위생기구설비공사	676,323,927							
	필요적 경비	5,630,810,547			조적공사	906,885,868		난방설비공사	676,323,927							
	그 밖의 비용	18,827,527,959			미장공사	2,092,813,819		가스설비공사	473,426,604							
토목 (13)	토공사	981,361,862			단열공사	697,604,846		자동제어설비공사	676,323,927	그 밖의 공종 (4)	특수설비공사	473,426,604				
	흙막이공사	0			방수-방습공사	2,162,574,879		공조설비공사	0		그 밖의 공사비 (1)	전기설비공사	3,383,974,470			
	비탈면보호공사	0			목공사	2,790,418,665		전기통신공사	2,950,057,265			그 밖의 공사비 (1)	소방설비공사	2,936,365,510		
	옹벽공사	0			가구공사	2,790,418,665		승강기공사	946,853,208				그 밖의 공사비 (1)	일반관리비	4,159,345,594	
	석축공사	0			금속공사	1,116,167,610		돌공사	2,371,855,901	간접비 (6)	이윤	3,607,218,405				
	우수-오수공사	530,465,679			지붕 및 홀통공사	837,125,528	도장공사				1,744,012,115	설계비	1,861,041,693			
	공동구 공사	0			창호공사	4,185,628,357		도배공사	1,604,490,714					감리비	2,813,509,609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265,232,840			유리공사	2,790,418,665										수장공사
	도로포장공사	596,774,423					타일공사				2,232,335,220	주방용구공사	2,092,814,538			
	건축 (23)	교통안전 시설물 공사			132,616,064	그 밖의 건축공사		2,441,616,242	보상비					0	그 밖의 사업비성 경비	
		정화조시설공사			0		기계설비 (9)				급수설비공사					1,149,750,531
		조경공사			2,082,078,324	급탕설비공사		946,853,934				합계	299,657,300,000			
		부대시설공사			1,246,594,702		그 밖의 건축공사		2,441,616,242							
공통가설공사		2,790,418,665			지정 및 기초공사	0										
가시설물공사		1,744,012,115					철골공사	0								
공동가설공사	2,790,418,665	기계설비 (9)			급수설비공사	1,149,750,531										
가시설물공사	1,744,012,115						급탕설비공사	946,853,934								
지정 및 기초공사	0															
철골공사	0															

■ 택지비 및 가산비 산출 내역

구분		금액(천원)	비고
택지비	택지비 가산비	136,648,829	기간이자, 제세공과금, 지역난방부담금, 암석지반 공사비, 말뚝박기 공사비, 흙막이 및 차수벽 공사비
건축비	건축비 가산비	163,008,875	구조형식 가산비, 법정초과 복리시설 건축비, 인텔리전트설비 공사비(홈네트워크, 에어컨냉매배관, 기계환기설비), 공동주택성능등급,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공사 등

■ 시행사 및 시공사

구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호	주식회사 대우건설	주식회사 대우건설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법인등록번호	110111-2137895	110111-2137895

■ 계약장소 및 문의

계약장소	문의전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401, 대릉테크노타운15차 1107호 대우건설 수도권남부마케팅권역사무실	031-8040-974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주중 10:00 ~ 11:30 / 13:00 ~ 17:00)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쇄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제공급 대상 세대가 계약체결 이후라도 소송 등에 의해 최초 계약자의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당첨 및 계약 권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 이외의 사항 등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https://www.prugio.com/house/2020/hanam/apt/index_w.aspx

■ 단지 주변 현황

